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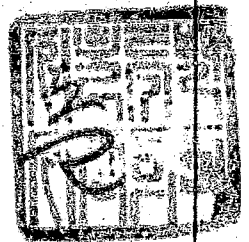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요강중 개정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6년 4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구 자



서울특별시회계사무회급요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회계사무회급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. 물품구매계약중 1외2. 물품구매심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외2. 물품구매심사

가. 심사대상: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이 50만원이상 총액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구매의 적정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심사제도를 운용한다.

- 1) 시방을 제시하여 제조할 수 없거나 다른 품목의 매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의 특허품, 식용외안경류품
- 2) 단위 생산품
- 3) 국산 대체 불가능 품목으로서 내자로 구입하는 수입품
- 4)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및 재료
- 5)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과 주요물품.

나. 구성

1) 본정에서는 국(심, 과)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군, 소(3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)에서는 단위기관별로 구성하되 단위기관장을 심사책임관으로 한다.

심사책임관 - 해당 국(심, 과)의 장

부심사 " - 구매요구부서의 장당과장

심사관 - 해당국의 과, 계장 (3인 이상)

2)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타국의 공무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킬수 있다

다. 용 언

- 1) 과 실, 과 장이 심사 대상의 구매요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구서(서식 5호)를 심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심사요구부서의 담당계장은 심사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, 및 질문에 대한 자료 제시, 설명을 하여야 한다.
- 3) 부의안건의 심사는 제1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여, 심사 결정서를 구매요구서(계약심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의뢰서)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서식 5호 및 서식 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제5호)

중앙공무원시험요구서

1976.

수신 시험 위원장 귀하

귀부처 시험위원회의 장편 기비영 관하여 심사요구  
각은 다음과 같이 하오니 사정하시기를 바랍니다.

- 1. 장 영
- 2. 장 영
- 3. 장 영

순	영	구	귀	단	수	장	영	비	고

과 영

